

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포상상별위원회 시행세칙

○ 제1조 목적

이 포상상별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(이하 '본 학회'라 함)의 포상 및 상별윤리를 확보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○ 제2조 대상

논문연구 및 작품제작을 통하여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킨 회원과 학회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.

회원은 학회 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과 본 학회 규정 등 학회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○ 제3조 적용범위

1. 학술상: 논문 분야의 탁월한 연구 실적 및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가 큰 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, 인원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질적학술상 선정 기준: 각 제호별로 심사 평가 점수 최우수자

양적학술상 선정 기준: 각 연도별로 단독투고(100%)와 공동투고(70%) 점수를 환산하여 시상 학술논문 대상 선정 기준: 3년 간 연속 질적, 양적 학술상 수상자에게 시상한다.

학술출판상: 각 연도별로 저서 출판자 중 질적, 양적내용을 감안하여 시상한다.

2. 공로상: 학회의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.

3. 지도자상: 학회가 공모전 및 베스트브랜드&패키지디자인어워즈 등 학회의 행사에서 학생 지도 및 업체의 디자인 지도에 공로가 큰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

4. 특별상: 그 외에 학회 및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○ 제4조 선정위원회

회장이 포상상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.

○ 제5조 수상자의 윤리 준수 의무

연구자는 정직성과 진실성에 기초하여 향후에도 학회의 명예와 신뢰에 저해되는 부적절한 행위를 삼가야 한다.

○ 제6조 기타

정기총회 시에 학술상, 공로상, 지도자상, 특별상 등을 시상하며 공모전지도자상은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.

가능한 한 한 수상자가 다른 상을 중복 수상하지 않게 하고, 다음 해에 연달아 수상 대상자가 될 경우,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시상한다.

● 제7조 징계

포상상벌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,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
1. 포상상벌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서 포상 취소,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2. 포상상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기록은 포상상벌위원회에서 보관하며, 조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한다.

● 부칙

1. 본 포상상벌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개정 시행한다.